

# 산업안전보건의 강화 :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노동(법)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이다.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생각이 싹트며 제도 개선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 중이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기존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관계의 고질적 문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자리한 오랜 구조와 마주하며 그 정착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추세는 세계적 현상이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결의가 있었다. 1998년에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대한 ILO 선언」을 개정해 그 목록의 다섯 번째에 산업안전보건을 포함시킨 것이다. 사실 산업안전보건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 및 권리”로의 “승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ILO가 탄생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문) 초안」은 이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의 축조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며 최종 합의된 선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본조건(fundamental to decent work)”으로 절충되었다.

치열하게 논의된 법적 쟁점에는 산업안전보건의 기존 “기본적 원리와 권리”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인정”,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철폐”,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에 비견될 만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지에 대한 실체적 논쟁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존 선언의 주요 내용을 다른 선언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쟁점과 산업안전보건이 “기본적 원리와 권리”로 추가되는 것이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대한 ILO 선언」(1998)을 인용해온 국제통상협정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잠재적이지만 민감한 논점 등도 포함되었다.<sup>1)</sup> 그러나 2020년 이래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함께 경험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관련 법절차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정리되었다. 2022년 5~6월 열린 총회에서는 노·사 및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정치적 합의까지 이루어져 1998년 ILO 선언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 및 권리”로 포함한 것이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호의 글은 이러한 논의의 배경과 쟁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Sean Cooney의 〈ILO 기본 산업안전보건 협약: 개론〉은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대한 ILO 선언」 이후 ILO 차원에서 전개된 산업안전보건 논의 중 기본협약으로 선정된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준다. 이어지는 Desiree LeClercq의 〈새로운 노동기본권으로서 산업안전보건: 기회와 도전〉은 선진국 혹은 북반구의 시선으로 이번 개정을 바라본다. 특히 이번 개정과 무역협정에 설치된 노동조항의 관계에 주목해 그것의 국제법적 쟁점(조약 해석) 및 합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Saurabh Bhattacharjee의 〈인도의 기본원칙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나아갈 방향〉은 ILO 내에서 상대적으로 동 개정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취했던 인도의 관점을 소개한다. 인도의 고유한 법체계와 법집행 조직에서 비롯되는 난관이 주로 서술되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강화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읽어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희망적인 낙관으로 글을 맺는다. 모쪼록 이번호의 글이 산업안전보건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이웃국가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주기를 희망한다. **KLI**

1)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Provisional Record 6B(Rev.), 108th Session, Geneva, June 2019, Report of the Committee of the Whole: Summary of proceedings, paras 986-1014 and 1327-1333.